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1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3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서종석)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 정비
(안 제5조)

○ 서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과 일치하도록 정비(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묵)

○ 본 기금 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의 연장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안 제5조제3항에서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와 일치하도록 안 제10조제1항 중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를 ‘회계연도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으로 하여 타 기금과 통일되게 규정하였으며,

- 그 밖에 안 제2조의2제7호,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5항, 안 제6조의3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내실있는 기금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96 호
----------	---------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내실있게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나.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 정비(안 제5조)

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과 일치하도록 정비(안 제10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7.9.28. ~ 10.1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3조의2 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등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중 “2/3”을 각각 “3분의 2”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창업”이란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을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8.、9. (생략)</p> <p>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p>	<p>제1조(목적)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 ----- ----- ----- ----- ----- ----- ----- ----- -----</p> <p>제2조의2(정의) ----- ----- 뜻은 ----- 1. ~ 6. (현행과 같음) 7.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 ----- 8.、9.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2022년 12월 31일 ----- ----- -----</p>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④、⑤ (생략)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회계법」-----

-----.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한다.

제6조의3(회의 및 수당 등) ① (생략)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략)

제10조(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의3(회의 및 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3분의 2 -----
----- 3분의 2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 ①----- 회계연도마다-----

-----.

② (현행과 같음)